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940 판결 [구상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고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김다연, 임숙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현석

3. D

변론 종결2020. 1. 14.

판결 선고2020. 2.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3. 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3. 1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3. 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최후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D에 대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은 제외)은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2. 9.부터 2018.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8. 3. 8.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최후 소장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 연 12%의 약정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의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B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가 피고 C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4호증, 갑7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인 2017. 6. 28.자로 작성된

보증보험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임인 D'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짜에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피고 C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E이 피고 C 명의의 위 위임장 및 피고 C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다른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C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연대입보각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510호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든 서증들은 모두 E이 권한 없이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원용하는 을나8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피고 C의 대표이사 F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상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 또는 이를 포함하는 어떤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C 명의의 연대보증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권순호

별지